



<http://wiki.homerecz.com>



.....	1
.....	1
.....	1
.....	1
<b>YouTube</b>	5
.....	5
2	6
.....	6
.....	7
<b>Public Domain</b>	8
.....	8
.....	10
.....	10
.....	10
.....	10



# YouTube

? -  
<https://support.google.com/youtube/answer/2490020?hl=ko>

YouTube

YouTube Content ID

AI

가

1)

가

가

2)

가

(

)

3)

FAQ

- <https://www.komca.or.kr/CTLJSP>

2

**유튜브 영상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?**



유튜브 이용약관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,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(예 : 음악 트랙 등) 업로드 시, 해당 저작권 보유자는 저작권 게시 중단을 제출하지 않는 대신 게시된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해당 동영상 업로더의 수익창출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본 협회와 유튜브가 체결한 '전송이용허락' 계약은 채널 운영자의 광고수익 창출을 위한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(YPP) 가입과 무관하며, 수익 창출과 관련한 부분은 유튜브 고객센터(080-822-1450)를 통해 문의하신다면, 더욱 정확한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※ 유튜브 고객센터 : "내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우" (<https://support.google.com/youtube/answer/2490020?hl=ko>)

※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자(작사, 작곡, 편곡가)님들의 저작재산권을 신탁 받아 관리하는 단체로서, 협회관리곡에 한하여 안내 가능합니다. 협회관리곡 여부는 협회 홈페이지 '저작물검색'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4

**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이 저작권 침해라고 뜹니다.**



유튜브에서는 Content ID 시스템으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감지하고 있습니다. 콘텐츠의 저작권 소유자가 KOMCA\_CS로 표기되는 것은, 협회 관리 저작물을 감지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출력되는 문구로, 이로 인하여 해당 영상이 차단되거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아닙니다.

그 외 권리자(저작인접권자 : 실연자, 음반제작자, 방송사업자 등)에 의해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, 해당 권리자를 통해 저작권 협의를 진행하시거나, 유튜브의 '이의제기' 기능을 활용 해주시면 됩니다.

※ 유튜브 고객센터 : "내 동영상에 'Music Publishing Rights Collecting Society' 또는 '1곳 이상의 음악 게시 권한 집중 관리 단체'에서 관리하는 저작권 보호 콘텐츠가 포함되었을 수 있다는 알림을 받았다면 YouTube의 Content ID 시스템이 해당 동영상에서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가 저작권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음악 작품을 1개 이상 식별했다는 의미입니다." (<https://support.google.com/youtube/answer/2620262>)

※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자(작사, 작곡, 편곡가)님들의 저작재산권을 신탁 받아 관리하는 단체로서, 협회관리곡에 한하여 안내 가능합니다. 협회관리곡 여부는 협회 홈페이지 '저작물검색'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## 2

2

, 가  
가 가

2  
4)

<https://www.lawtimes.co.kr/news/75465> <sup>5)</sup>

FAQ

- <https://www.komca.or.kr/CTLJSP>

3 유튜브에 커버(COVER) 노래/연주/댄스 영상을 업로드하고 싶습니다.

▶ 음악저작물을 원 저작자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변형해서 이용하는 경우(번역, 편곡, 개사 등), 원곡의 2차적 저작물작성권 및 동일성유지권에 대해 원 저작자의 허락을 득해야 합니다. 이는 저작권법 제14조에 따라 원 저작자에게 일신전속되는 권리로, 원 저작자와 개별적으로 '저작인격권' 협의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.

단, 이와는 별도로 해당 영상에 특정 기관/단체의 로고/문구가 삽입되어 특정 기관, 단체, 회사, 제품 등을 광고/홍보하는 영상이라고 판단될 경우, 수익창출 여부 및 공익적 목적 등과 관계없이 '광고 복제 사용료'가 발생합니다. 자료실->이용허락신청서식->광고 서식 작성하여 접수해주시면 됩니다.

\*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자(작사, 작곡, 편곡가)님들의 저작재산권을 신탁 받아 관리하는 단체로서, 협회관리곡에 한하여 안내 가능합니다. 협회관리곡 여부는 협회 홈페이지 '저작물검색'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5 유튜브에 '내가 직접 연주한' 음원을 사용하려고 하는데, 내가 직접 연주한 것이니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해도 저작권 문제는 없나요?

▶ 음악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부르거나 연주한 경우에도, 저작권자(작곡·작사·편곡가)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. MR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이외에도 해당 MR을 제작한 음원 제작사 및 실연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.

\* 참고 :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(2019, 한국저작권위원회) (52쪽)

\*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자(작사, 작곡, 편곡가)님들의 저작재산권을 신탁 받아 관리하는 단체로서, 협회관리곡에 한하여 안내 가능합니다. 협회관리곡 여부는 협회 홈페이지 '저작물검색'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https://support.google.com/youtube/answer/2490020?hl=ko>

가

## 직접 녹음한 리메이크 노래가 포함된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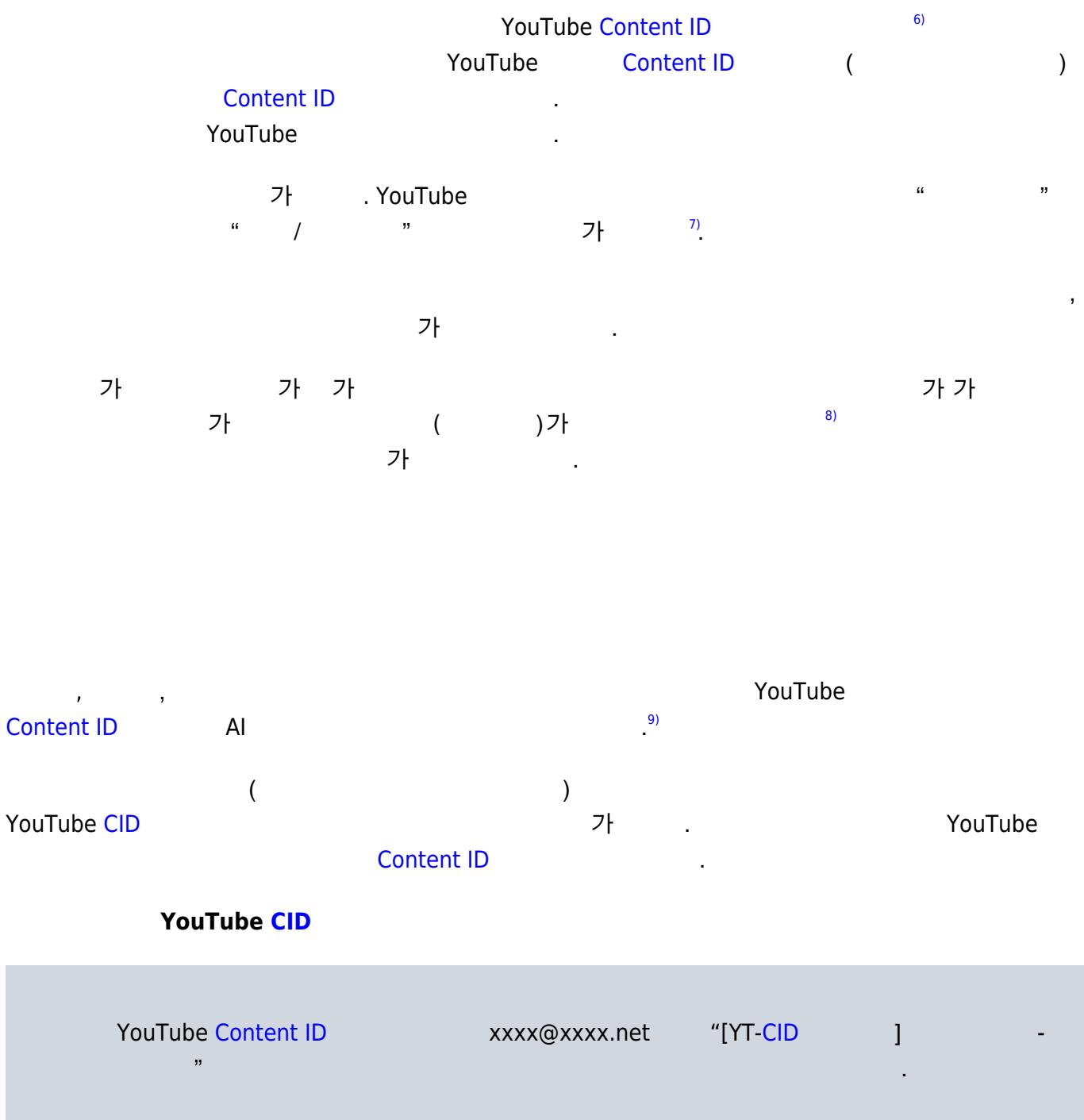
^

일부 커버 곡의 경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. 수익 창출 요건에 부합하려면 음악 출판사가 Content ID 시스템을 통해 노래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수익을 창출하도록 선택해야 합니다.

소유권이 주장되지 않은 노래를 사용하면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. 노래의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미리 명시적인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
상업적 음원(예: 연주곡, 노래방 녹음, 아티스트의 라이브 콘서트 공연)은 모두 수익 창출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.

[수익 창출 요건에 부합하는 리메이크 동영상 자세히 알아보기](#)



# Public Domain

## Public Domain

, 70

가

<https://support.google.com/youtube/thread/176154444/%EC%9D%8C%EC%95%85-%EC%BB%A4%EB%B2%84-%EC%98%81%EC%83%81-%EB%AC%B8%EC%9D%98%EB%93%9C%EB%A6%BD%EB%8B%88%EB%8B%A4?hl=ko>

- Facebook
- Twitter
- Email

1)

2)



동영상: 음정 수정(튠) 쌍 고수의 실제 작업  
동영상 저작권 세부정보

상태 개요

동영상에 대한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이 채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 이는 저작권 위반 경고가 아닙니다.

채널	공개 상태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영향을 받지 ...	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공개
동영상에 대한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이 채널에 영 ...	

누구나 볼 수 있는 동영상입니다.

이 동영상에서 식별된 콘텐츠 목록입니다

사용된 콘텐츠	동영상에 미치는 영향
 니가 있어야 할 곳 이 노래의 멜로디를 사용하는 동영상 콘텐츠가 발견된 구간: 4:40 - 5:28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영향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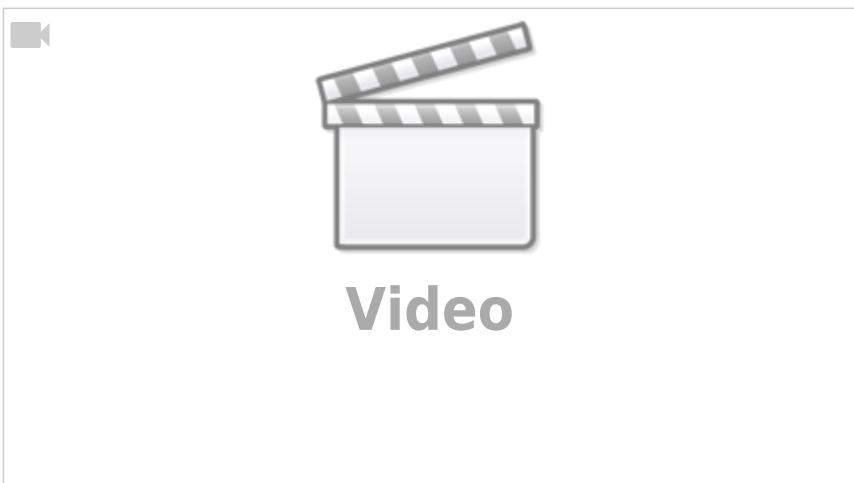
3)

가

4)

가 , ,

5)



6)

7)

- <https://support.google.com/youtube/answer/3301938>

8)

70

9)

YouTube



<http://wiki.homerecz.com>

From:  
<https://wiki.homerecz.com/> -

Last update: **2024/03/03**

: (admin@homerecz.com)